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5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오세희 · 김남희 · 이훈기
위성곤 · 김우영 · 이재관
전진숙 · 민병덕 · 박선원
박수현 · 조계원 · 민형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u>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u>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u>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
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
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llegible]

2.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6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